

제 목

드라마의 방영에 따른 초상권 침해 여부

판결 요지서

□ 사건의 경과

사 건 번 호	2006가합36290
원 고	원고 1 내지 4
피 고	주식회사 00방송, 주식회사 000 프로덕션
소 제기일	2006. 4. 27.
판결 선고일	2006. 11. 29.
쟁 점	원고들이 어떠한 조건하에 드라마 촬영을 동의하였는지, 피고들의 드라마 제작·방영이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지,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면 그 손해액의 범위 및 침해예방청구의 인정여부
결과 (주문)	원고들 일부 승소
참 고 조 문	

□ 판결 요지

○ 사안의 개요

1. 원고들은 현대음악 연주부분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고, 피고 000 프로덕션은 '0000'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피고 00방송에게 공급하였고, 피고 00방송은 위 드라마를 2006. 3.경부터

2006. 5.경까지 16회에 걸쳐 방영하였는데, 2006. 4. 4. 방영된 위 드라마의 8회분에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(원고들이 2006. 4. 2. 작곡가 이○○의 작곡발표회에서 연주한 장면이다)이 촬영되어 방영되었다.

2. 원고들은 위 드라마 방영 직후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을 본 지인들로부터 그 방영사실을 전해 듣고, 피고 00방송의 자회사인 0000 인터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'드라마 다시보기'를 통하여 위 방영사실을 확인한 다음, 2006. 4. 6.과 2006. 4. 10. 피고들에게 위 드라마의 방영으로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, 위 드라마의 재방영금지 및 인터넷상 '드라마 다시보기' 다운로드의 제공금지 등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.
3. 이에 피고 00방송은 2006. 4. 7. 0000에게 요청하여 인터넷상의 '드라마 다시보기'에서 위 연주장면을 삭제하였고, 2006. 4. 9. 텔레비전에서도 위 장면을 삭제하여 드라마를 재방영하였으나, 자회사인 00000에 대하여는 위 장면의 삭제요청을 지체함으로써 00000은 자체 케이블방송국을 통하여 2006. 4. 10., 4. 15., 4. 16. 위 연주 장면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드라마를 재방영하였다.
4. 피고 00방송은 2006. 4. 25. 00000에게 위 연주장면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, 같은 날 00000(피고 00방송에서 방영된 드라마의 해외판매를 위한 수출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하는 회사이다)에게도 위 드라마에 대한 수출용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함에 있어 연주장면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○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

1. 원고들은, 피고 000 프로덕션의 제작진이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촬영을 허락하였는데, 피고 000 프로덕션이 촬영한 연주장면에서는 원고들의 얼굴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고, 피고 00방송은 위와 같은 잘못이 있는 연주장면이 포함된 드라마

를 방영하였으므로, 피고들은 연주장면의 촬영 및 방영으로 인한 원고들의 초상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, 드라마의 내용전개상 연주장면이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피고들이 삭제한 연주장면을 다시 복구하여 재방영을 하거나 비디오 등을 제작할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,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예방청구 및 그 의무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청구도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.

2. 이에 피고들은 촬영 당시 공연기획사 대표를 통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고, 방영된 연주장면에서 원고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어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며, 이미 위 연주장면을 삭제한 이상 침해예방금지 및 간접강제청구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룬다.
3. 이 사건의 쟁점은, 원고들이 어떠한 조건하에 드라마 촬영을 동의한 것인지, 피고들의 드라마 제작 및 방영이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지,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손해액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, 이미 연주장면이 삭제되었음에도 원고들의 침해예방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이다.

○ 법원의 판단

1.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고,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의하면, 원고들은 피고 000 프로덕션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연주장면에 대한 촬영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바, 피고 000 프로덕션은 원고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드라마를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 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였고, 피고 000방송은 위와 같이 촬영된 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.
2. 위 연주장면의 분량이 약 7초 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, 피고 000 프로덕

선이 위 연주장면을 촬영함에 있어 원고들의 유명세에 편승하여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등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,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2,000,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(원고들 주장과 같은 재산상 손해 부분을 인정하기는 힘들다).

3.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예방청구가 인정되려면 침해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침해의 가능성이 큰 경우라야 할 것인데,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, 피고들이 삭제된 연주장면을 기술적으로 쉽게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예방청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.

□ 판결의 의미

- 드라마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작진 및 방송사에 영리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시한 사안임